



광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5가단39846 손해배상(지)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

담당변호사 기세운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

변 론 종 결 2026. 4. 23.

판 결 선 고 2026. 6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6. 6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8/9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



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서 2013년경 저작물 위탁판매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나.항 기재 각 저작물(이하 '이 사건 각 저작물'이라 한다)을 창작하였고, 2016. 9.경 저작물 판매 회사인 'C'를 설립하여 저작물 사용권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.

나. 피고는 경산시 D에서 E요양원을 운영하면서, ① 2017. 2.경부터 2023. 8.경까지 위 요양원 지하 1층에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9개[F, G, H, I, J K, L, M, N]를 일부 변형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벽화들(이하 '이 사건 벽화'라 한다)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이 사건 벽화를 촬영한 사진을 위 요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(이하 '이 사건 제1행위'라 한다), ② 2017. 2. 2.경부터 2024. 1. 11.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12개를 위 요양원 소식지 등의 배경이미지로 삽입한 후 이를 위 요양원의 네이버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제2행위'라 한다), ③ 2021. 4. 20. 위 요양원 1층 외벽 유리에 'E요양원' 시트지를 제작하면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'O'를 삽입한 후 이를 위 요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제3행위'라 한다).

다. 원고는 2023. 8.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,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고소한 이후 이 사건 벽화와 위



③항 시트지를 전부 철거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3. 10.경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, 대구지방법검찰청은 2024. 4. 19. 이 사건 제3행위(다만,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분은 제외)에 대하여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으며, 2024. 7. 3. 이 사건 제2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하였고, 2024. 10. 16. 이 사건 제1행위(다만,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분은 제외)에 대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호증, 을 제1, 5, 6, 9, 12, 13호증(이하
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손해배상책임의 성립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작품들을 모방한 벽화를 제작하고 원고의 작품들을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 소식지와 시트지 등에 삽입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

가)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'전통놀이'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나온 게시물들로, 권리관리정보의 표시가 없어 피고는 자유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. 또한, 피고는 요양원의 시설 안내 및 입소자들의 입소생활, 활동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였고, 그 뒷배경으로 이 사건 벽화가 등장한 것이므로,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.



나)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였는바, 저작권법 제30조의 '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'에 해당하므로,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다) 피고가 촬영한 사진의 뒷배경에 이 사건 벽화가 나온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2) 미필적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

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, 즉 ① 피고도 이 사건 벽화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복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, 이 사건 제2, 3행위의 각 그림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한 것인 이상,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임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아무런 이용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를 한 점, ③ 원고는 2013년 내지 2014년경 이 사건 제1행위의 대상인 그림들을 원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고, 위 그림들의 하단에는 'Copyright©A All right Reserved, A 일러스트'라고 기재되어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

저작권법 제30조는 "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, 스캐



너,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고 규정하고 있다.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'영리의 목적'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고, 피고가 요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, 피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, ②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는 모두 피고의 요양원에서 이루어졌는바(2017. 3.경 피고의 요양원에는 49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었다),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'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'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4) 부수적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

저작권법 제35조의3은 "사진촬영, 녹음 또는 녹화(이하 이 조에서 "촬영등"이라 한다)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·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 다만,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,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, 위 규정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.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,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, 위 규정은 사진촬영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과 같이 원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아닌 이 사



건 벽화를 촬영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가. 재산상 손해

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 122,161,000원(= 이 사건 제1행위 81,000,000원¹⁾ + 이 사건 제2행위 36,561,000원²⁾ + 이 사건 제3행위 4,600,000원³⁾)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, 그중 일부인 60,000,000원을 청구하고 있다.

2) 판단

가)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'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'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,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,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

1) = 이 사건 벽화 제작 64,800,000원(= 연 120만 원 × 6년 × 9건) + 이 사건 벽화의 인터넷 게시 16,200,000원(= 연 30만 원 × 6년 × 9건)

2) = 안내 포스터 1매 1,000,000원 + 초대장 2매 800,000원 + 소식지 9회 3,600,000원 + 인터넷 게시 31,161,000원(= 연 30만 원 × 17회 × 6.11년)

3) = 광고시트지 무단 제작 3,600,000원(= 연 120만 원 × 3년) + 홈페이지 게시 900,000원(= 연 30만 원 × 3년)



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. 그런데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도 위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,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(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7다76733 판결 등 참조).

나)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, 즉 ① 원고가 운영하는 'C' 웹사이트 가격표에는 옥외광고 1년 120만 원, 인터넷(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 등) 1년 30만 원, 고객홍보용 포스터 100만 원, 리플렛(날장인쇄물) 40만 원, 벽화 1년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의 태양,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, ② 사용되는 저작물의 개수가 많아지고 저작물의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작물 1개당 또는 사용기간 1년당 평균 사용료는 감액이 되며, 감액 비율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계약 체결시마다 저작물의 사용 목적, 매체,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보이는 점, ③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저작물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와 같이 사용될 경우 그 사용료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거나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업계의 일반화된 이용료가 증명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.



다)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내용, 피고의 저작물 사용 목적과 그 게시범위, 대상, 사용 형태 및 기간,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를 통해 피고가 얻은 순수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,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7,000,000원으로 정한다.

나. 정신적 손해

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를 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(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), 원고의 경력,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창작에 들인 노력,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 및 태양, 기간,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,000,000원으로 인정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,000,000원(= 재산적 손해 7,000,000원 + 정신적 손해 2,0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. 6. 1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. 6. 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6-30

판사 황민웅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6-30

별지

목 록

번호	사용처	제목	게시일	작품명 (작품번호)
1	네이버 블로그	[] 요양원 [] 요양원-소식지	2021.12.28.~2023.8.20.	
2	(46p~51p)	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	2021.12.21.~2024.1.11.	
3	홈페이지 (주야간보호 주간갤러리)	주간갤러리 (새 건물 모습)	2017.2.2.~2023.10월	
4	(52p~57p)	주간갤러리 (제목 : 2019하반기 보호자간담회 및 송년회행사)	2019.11.26.~2023.10월	
5	홈페이지 (주야간보호 알림방) (58p~74p)	2019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및 송년회행사	2019.11.26.~2023.10월	
6		[] 2021년 4월 소식지	2021.3.31.~2023.10월	
7		[] 2021년 5월 소식지	2021.4.30.~2023.10월	
8		[] 2021년 6월 소식지	2021.5.31.~2023.10월	
9		[] 2021년 7월 소식지	2021.6.30.~2023.10월	
10		[] 2022년 11월 소식지	2022.10.28.~2023.10월	
11		[] 2023년 2월 소식지	2023.1.30.~2023.10월	
12		[] 2023년 4월 소식지	2023.3.30.~2023.10월	
13		[] 2023년 6월 소식지	2023.5.30.~2023.10월	
14	홈페이지 (공지사항) (75p~82p)	2019년 하반기(12월) 보호자 간담회 및 송년회 실시	2019.11.26.~2023.10월	
15		2020. 4월 [] 요양원 소식지	2020.4.4.~2023.10월	
16		21.12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	2021.12.23.~2023.10월	
17		2022.1월 소식지	2021.12.28.~2023.10월	